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395		
최초 등록일	2008.08.29	최종 등록일	2025.04.16

바바라 정보공개서

[(주)바바라앤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 03 . 28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15-4 MG 빌딩 7층

TEL: 02-6213-6557 FAX:02-6215-6559

담당부서-영업 : 070-8633-2646 www.babaraflat.co.kr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직전 3 개 사업년도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바바라 연혁
3. 최근 3 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4. 최근 3 개년도 말 가맹사업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5. 기타 가맹사업현황
6.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7.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8. 바바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광고·판촉 지출 내역
10. 가맹금 예치기관
11.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4. 구입비용
5.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시 비용 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정 보 공 개 사 항

I. 당사의 일반정보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바바라앤코의 “바바라”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바바라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바바라 앤코	바바라, BABARA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89(성수동 2, MG 빌딩 7 층)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7.02.	2009.7.01.	이재정	02-6213-6557	02-6215-6559
	법인등록번호	110111-4129668	사업자등록번호	206-86-34188	

* 바바라가맹사업은 2004 년 1 월부터 오선옥(개인사업자)이 운영하다가 2009 년 7 월부터 (주)바바라앤코가 가맹사업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①	영업표지	주 소		
본인 (대표이사)	이재정 (주)바바라앤코	바바라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89 MG 빌딩 7 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재정	02-6213-6557	02-6215-6559
배우자 (이사)	오선옥 (주)바바라앤코	바바라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89 MG 빌딩 7 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재정	02-6213-6557	02-6215-6559
사용인	윤관형	바바라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89 MG 빌딩 7 층		

(부사장)	(주)바바라엔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재정	02-6213-6557	02-6215-6559
사외이사 (감사)	김문호	바바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레미안퍼스티지아파트 114 동 603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재정	02-6213-6557	02-6215-6559

3.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서 직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주식회사 크레파코리아		2017 년 8 월 17 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94 3 층 303 호(성수동 2 가,세림빌딩)	오선옥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바바라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별첨 1 과 같습니다.

5. 가맹본부의 직전 3 개 사업년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 년	9,846,869	6,166,450	3,680,419	20,481,545	1,088,755	670,159
2023 년	10,299,716	5,798,873	4,500,843	19,762,927	1,313,653	820,424

2024 년	11,220,811	5,933,563	5,287,249	19,133,093	1,177,609	786,406
--------	------------	-----------	-----------	------------	-----------	---------

※ 그 근거자료는 별첨 6 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5.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현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 사업 관련 임원	이재정	대표이사	2009.07~현재	(주)바바라애크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오선옥	이사	2004.01~2009.06	바바라	개인사업경영
			2009.07~현재	(주)바바라애크	이사
	윤관형	부사장	2018.06.19~현재	(주)바바라애크	부사장
	김문호	감사	2008.03~현재	(주)바바라애크	감사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
	상근	비상근	
2024 년 12 월 31 일	2 명	2 명	33 명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바바라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별첨 1 과 같습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바바라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07. 06. 02 입니다.

- * 바바라 가맹사업은 2007 년 6 월부터 오선옥(개인사업자)이 운영하다가 2009 년 7 월부터 (주)바바라앤코가 가맹사업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바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바바라	바바라	오선옥	2007.6.2. ~ 2009.6.30.	서울시 성동구성수동 2 가 317-20
(주)바바라앤코	바바라	이재정	2009.07.1. ~ 현재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89(성수동 2 가, MG 빌딩 7 층)

3. (바바라앤코) 업종

영업표지	업종	
바바라앤코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의류/패션	숙녀화

4. 최근 3 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바바라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바바라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 년말 기준 총 39 개] [전부 직영점]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2	-	32	34	-	34	39	-	39
서울	6	-	6	7	-	7	7	-	7
부산	2	-	2	2	-	2	4	-	4

대구	2	-	2	2	-	2	2	-	2
인천	2	-	2	2	-	2	2	-	2
광주	-	-	-	1	-	1	1	-	1
대전	3	-	3	3	-	3	3	-	3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4	-	14	14	-	14	17	-	17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1	-	1
충남	1	-	1	1	-	1	1	-	1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2	-	2	2	-	2	1	-	1
제주	-	-	-	-	-	-	-	-	-

5. 최근 3 개년도 말 바바라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바바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직전 3 년간 신규 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년	0	0	0	0	0	0
2023 년	0	0	0	0	0	0
2024 년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6. 기타 가맹사업현황

바바라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2024 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①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④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⑨	면적 3.3m ² 당	상한⑩	면적 3.3m2당⑪	하한⑫	면적 3.3m2당⑬	
전체⑥	-	해당없음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 당사 매출은 본사 전산 프로그램의 매출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제 매장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할인 및 균일가 판매 미적용).

가맹점 중 3 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2 항·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바바라앤코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바바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 없습니다.

9. 바바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바라의 2024 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4	0	0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4 년 광고 및 판촉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①	수단②	기간③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37,548	237,548	-	
광고	신문/잡지	연중	(비공개)	(비공개)	-	
	인터넷	연중	(비공개)	(비공개)	-	
	이벤트/홍보	연중	(비공개)	(비공개)	-	
판촉	판촉물 제작	연중	210	210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예금사업팀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02)2195-1343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 조치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바바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단위:원/부가세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선정 점포 실사의 대가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의 대가 4. 가맹점 개점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5. 개점 전 교육비	11,0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부가세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개점 전 교육비 2.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의 대가 3. 양수가맹점개점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4. 홍보지원비	교육비, 계약 이행 보증금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	----	----------	------	-------

		)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10,000,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 포함)/단위:원
합계	21,000,000
가맹비	11,000,000
보증금	10,000,0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바바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①	지급대상②	금액③	면적 (1평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⑤
총계		41,800	4,180			
필수설비(장비)	협력업체 외 1개사	1,650	165	설치 3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10평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외 1개사	14,300	1,43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10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10평 기준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본사	17,600	1,760	물품 공급 3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10평 기준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본사	8,250	825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	10평 기준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200[3.3m ² 당].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원/부가세포함)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	21,000,000	계약 체결 시
중도금	잔여대금의 50%	공사시작 1일전
잔금	잔여대금의 50%	검수 후 즉시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예치금의 50%

사.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바바라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아.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지급대상자	금 액(단위: 원, 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개점이 후 교육비	수시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교육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단 서비스 교육의 경우 서울경기지역은 1 회당 50,000 그밖의 지역은 100,000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	가맹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 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정기지 금금	공동광고료	가맹본부	월 200,000(잡지광고, 협찬 광고에 한함)	매월말	소모성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 비용			해당사항 없음		
자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 지	월 계속가맹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부담

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1년일 경우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5. 경업금지 기간

당사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바바라'와 같은 동종 업종(숙녀화 도소매, 타사 가맹점 및 독립점포)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존속 중에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바바라'의 영업과 동종업종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6.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7.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바바라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

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바바라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4. 비용 부담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월 220	개별 청구	광고 활동 실시 후 반 환되지 않음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 사 부담이며 판 촉물 제작 비용 은 가맹점사업 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 의 분담은 협의 하여 결정	개별 청구	판촉 활동 실 시 후 반환 되 지 않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간판류 임차료	가맹본부	1,500 ~ 3,0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 으며, 교체비용 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증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 용	가맹본부	20,000 ~ 25,000	교체, 보수후 30일 이내			
점포환경개 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가맹본부	550	재고조사 후 30일 이내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20%				

5.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이 없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품목 구입을 강요하거나 요청 하는일이 없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바바라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품목 공급가격 상 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바바라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통상적으로 제화점이나 패션잡화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나 용역	좌측 상품·용역명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1 회 위반 : 구두 경고 2 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 회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가맹본부	계열회사
여성 숙녀화 도소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②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변경 (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해당 없습니다.

4)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4	0%	86%	4%	1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4	0%	27%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가. 가맹계약기간

바바라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년입니다.

1)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 (주)바바라앤코는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 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2)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 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1. +15일 이내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2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두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2 항 25 조 및 3 항 각 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4 조 3 항 및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31 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1 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 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 조	1 호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 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 경우	17 조 1 항 및 2 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로 하여금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 조 2 항~4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9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 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 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7 조 2 항 및 3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 조 2~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1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21 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5)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 1)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A.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B.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C. 그 밖의 가맹점 사어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운영권의 한매.양도.양속 및 대리행사

나)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양수인은 당사에게 교육비, 계약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할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가)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2. 경업금지 범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플랫 등 여성용 신발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업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바바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오전 11:00-오후 21:00	연간 최소 300일 이상영업(다만 영업시간과 최소영업일을 따로 정할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정한 기준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 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가)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1)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 비용은 상품광고의 경우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상품광고와 가맹점 모집광고를 함께 광고하는 경우 가맹본부 25%, 가맹점사업자 75%, 가맹점 모집광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 실시 최소 1개월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 비용 및 각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통지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공동의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물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제작 비용은 실비로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 밖의 판촉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

(가맹사업법 제11조2항1호)

현재 가맹 사업 가입시 계약서 작성시에 항목을 작성하고있다. 해당 항목은 가맹본부 계약의 체결, 이행, 불이행, 또는 계약상 정한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손해배상 포함)가 정산된 이후에 반환한다. 다만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사유를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반환을 사유 해소 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담보 보증보험 2,000만원(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갑”에게 위 담보 제공)을 하고 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

(가맹사업법 제11조2항1호)

현재 가맹 사업 가입시 계약서 작성시에 항목을 작성하고있다. 해당 항목은 가맹본부 계약의 체결, 이행, 불이행, 또는 계약상 정한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손해배상 포함)가 정산된 이후에 반환한다. 다만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사유를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반환을 사유 해소 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담보 보증보험 2,000만원(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갑”에게 위 담보 제공)을 하고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 일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2-6213-6558).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2 일	IV.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1. 영업개 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1 일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 체결 1 일 전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가맹금예치)	-가맹 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2 일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 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2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5 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공사 실시	14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1 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1 일	
오픈	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D-day	

*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체결 다음날 까지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 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20 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2 일	1. 영업개시이전 부담
사업 설명 상담	-정보 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상권 분석	1 일	금전지급 방법 참조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 선정 -입지 주의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	1 일	

	- 계약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1 일	
가맹금예치	-가맹 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2 일	
점포실측/설계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2 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2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14 일	
교육 실시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1 일	
점포 개설	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픈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D-day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원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별도의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에 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경영활동 자문은 필요 시 적극 지원 하고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있지 않으나 다양한 창업자금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문의 요망).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당사는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으로 현재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직영점의 경우 판촉 및 프로모션 광고등의 지원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바바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시간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가족 및 구두의 이해(구구의기본소재인 가족의 종류와 가공법, 손질법, 구두의 종류와 특성등에 대한 이해)	2 시간	가맹계약 체결후 1개월이 내	필수 교육
	A/S(A/S의 종류와 상황별 대응법등)	1 시간		
	고객응대요령(고객만족의 이해, 고객의 유형 및 응대방법등)	1 시간		
	ERP 및 POS(현장의 POS 시스템 및 ERP 시스템의 이해 및 사용방법 설명)	1 시간		
	관리기법(고객관리, 점포관리, 경영노하우 등)	1 시간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바바라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	비고
개점 전 교육	5	가맹비에 포함됨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	협의	-
특별 교육	-	협의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4층
2	서울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시 영등포구 영종로 9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패션관 4층
3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1 (대치동 936-21) 2층 바바라

4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46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5층
5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잠실점 2층 바바라
6	서울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14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4층 바바라
7	서울	마리오 아울렛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85 마리오아울렛1관 2층
8	인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남로 35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3F 바바라
9	인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23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2층 센트럴존 H슈즈갤러리
10	경기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54 4층
11	경기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89 신세계백화점경기점 2층
12	경기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17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3층
13	경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현대백화점 판교점 (본관) 3층
14	경기	롯데백화점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롯데백화점 평촌점 3층 바바라
15	경기	롯데백화점 안산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12 롯데백화점 안산점 본관 3층
16	경기	롯데백화점 구리점	경기 구리시 경춘로 261 롯데백화점구리점 2층
17	경기	신세계스타필드 부천점	경기 부천시 옥길로1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2층
18	경기	신세계스타필드 안성점	경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80 스타필드 안성점

			1층 바바라
19	경기	스타필드 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75 스타필드 수원점 1층 바바라(슈즈)
20	경기	롯데몰 수지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38(성북동 23) 롯데몰 수지점 1층 바바라 구두
21	경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본관 1층
22	경기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200 신세계파주프리미엄아울렛 1층 329호
23	경기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시흥점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699 신세계시흥프리미엄아울렛 2층 바바라(구두)
24	경기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여주점	경기 여주시 상거동 460-15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점 WEST관 656A호 바바라
25	경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152번길 100 현대김포아울렛 본관 EAST존 2층 H슈즈갤러리
26	경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41 현대아울렛 SPACE1 (남양주점) 2층 스페이스A 바바라
27	대전	신세계백화점 대전점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 신세계백화점 대전 아트앤사이언스 3층
28	대전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11(둔산동) 지하1층
29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대전 유성구 용산동 579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2층 이스트존 바바라
30	충남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B관 1층

31	충북	현대백화점 충청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08 현대백화점 충청점 2층
32	광주	롯데아울렛 광주 월드컵점	광주시 서구 금화로 278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1층
33	대구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대구시 동구 동부로 149 신세계 백화점 3층
34	대구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4(신천동 295-5)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2층 바바라
35	경남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51 신세계백화점마산점 4층
36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점 B1층
37	부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당사리 6번지 롯데아울렛 1층
38	부산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부산점	부산 기장군 장안읍 정관로 1133 신세계사이먼아울렛 부산점 구관 3층 319c호 바바라(슈즈)
39	부산	현대커넥트 부산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25 현대커넥트 부산점 3층 바바라(슈즈)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년 2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410,678천원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 1(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

1. 일반 현황

브랜드 명	상호	로고
바바라	바바라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2. 사용허락 지식재산권

구분	출원 명칭	권리 범위	출원 및 등록 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만료일
서비스표	바바라	상호, 간판	출원일자 2013.11.14 등록일자 2014.11.04	출원번호 4020130075815 등록번호 4010680360000	오선옥	2024.11 .04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별첨 2 인테리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간판 및 사인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설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5 초도물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6 재무현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22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3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4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4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주)바바라앤코의
“바바라”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 제공일자: 2025년 월 일

정보공개서 수령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수령자 주소:

전화/휴대폰:

(주)바바라앤코: 서명(또는 기명날인)

수령확인서(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주)바바라앤코의
“바바라”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 제공일자: 2025년 월 일

정보공개서 수령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수령자 주소:

전화/휴대폰:

(주)바바라앤코: 서명(또는 기명날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 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